

# 2월 수시공시 변경보고서

## 1. 대상펀드명 및 주요변경내용

- 소규모펀드(1개월)여부 공시

발생일 : 2019년 1월 1일(화) ~ 2019년 1월 31일(목)

구분	펀드명
221102190411	키움글로벌멀티전략증권투자신탁 제 1 호[주식]A1
745102107424	키움글로벌멀티전략증권투자신탁 제 1 호[주식]Ae
221102190468	키움글로벌멀티전략증권투자신탁 제 1 호[주식]C-E
745308105510	키움쿼터백글로벌 EMP 로보어드바이저(채혼-재)C-P2(퇴직연금)
745104305289	키움쿼터백글로벌 EMP 로보어드바이저증권투자신탁[채혼-재]A1
745104305290	키움쿼터백글로벌 EMP 로보어드바이저증권투자신탁[채혼-재]Ae
745104305291	키움쿼터백글로벌 EMP 로보어드바이저증권투자신탁[채혼-재]C
745308108067	키움쿼터백글로벌 EMP 로보어드바이저증권투자신탁[채혼-재]C-P2e
745104305292	키움쿼터백글로벌 EMP 로보어드바이저증권투자신탁[채혼-재]Ce

## 2. 공시일자: 2018년 02월 11일(월)

## 3.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사유

- "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'자본시장법') 시행령 제 93 조(수시공시의 방법 등) 제 3 항 제 5 호에 의거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(투자신탁의 해지) 제 1 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공시해야 함
- 『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』에 따라 해당 사실이 변경될 경우(원본액 50억 초과 등) 추가 공시